

경운대학교 학생복지시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들에 관하여 대학구성원들의 시설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우리대학교 복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모든 대학구성원들이 그 자격을 가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를 정의한다.

1. 우리대학 전체 행사
2. 단과대학
3. 학부(과)
4. 학생회
5. 외부단체

제3조(이용자의신고) 운동장 및 체육관, 기타 복지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반드시 10일전에 사용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학교복지시설의 사용은 본 규정 제2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2. 관리자는 학교복지시설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관리자는 복지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허가된 내용에 관하여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관리비) 관리자는 복지시설을 외부단체에 대여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비를 납부 받고 유지관리를 한다.

1. 우리대학교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은 관리비를 받지 아니한다.
2. 복지시설 사용의 경우 관리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예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행사는 취소가 되며, 시설물 사용을 금한다.
3.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별도의 특별한 사유로 관리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원상복구) 이용자가 복지시설 사용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 이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교육재산 및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 하였을 경우 이를 즉각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사용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

다.

3. 이용자(신청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복지시설에 관하여 보존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음의 행위가 발견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사용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 임의대로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고의로 복지시설물에 관하여 파손, 훼손, 멸실 하였을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복지시설에 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4. 교육시설로서의 시설을 공공질서와 풍속에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제8조(시설확인유무) 이용자는 학교 복지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시설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내,외부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본 규정 이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대학 시설물관리규정, 비품관리규정, 전기시설물 안전관리규정, 방화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계약체결) 계약체결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다.

제11조(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운영하는 시설은 계약자가 관리 및 유지보수의 주체가 되며 이외의 시설은 “경운대학교 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